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4. 26 선고 2023가단410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와 D(E생, 여성) 사이에 진주시 F 대 454㎡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 5. 15.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진주시 F 대 454㎡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19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G는 2015. 1. 21. 진주시 F 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2023. 5. 15.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와 D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 5명이 각 5분의 1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 5명은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D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경위로 채무(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3. 6. 5.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망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포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있었고,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1/5)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2008년 2월경 난소암 진단을 받고, 2022년 유방암 및 경추척수증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도 부담하였으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도 하였다. 망인이 생전에 피고의 위와 같은 부양의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뒤에 망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위 토지 및 주택을 단독소유하기로 한 것이다.'¹⁾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약이 되지 않거나 협약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여분을 이유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약에 의해 그 기여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약에 의해 피고 주장의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기여분의 존재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기여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항변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별지

1)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뿐이다.